

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관련
번호	1937

제안년월일 : 2017년 9월 4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2조의 ‘청소년’과 ‘청소년의회교실’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, 안 제3조의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며, 일부 조문의 체계자구를 수정 보완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청소년과 청소년의회교실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2조).
-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, 그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띄어쓰기, 한글맞춤법 및 인용 조례 표기상 오류 수정 등 일부 체계자구를 보완함(안 제1조, 제4조, 제6조 및 제8조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○ 기 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지녀야할”을 “지녀야 할”으로 한다.

안 제2조 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 및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의회 운영에 관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모의의회를”을 “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”로 한다.

안 제3조 제1항 중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운영계획에는”을 “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

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안 제4조 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교육청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로, “초·중·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(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포함 한다)”를 “시에 있는 학교”로 각각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녀야 할”을 “지녀야 할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청소년의회교실 운영”을 “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참여자”를 “참가자”로 한다.

안 제6조 중 “「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」”로 한다.

안 제8조 중 “서울특별시교육감”을 “교육감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 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 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청소년”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“청소년의회교실”이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 운영에 관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모의 의회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청소년”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 및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“청소년의회교실”이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.</p>
<p>제3조(운영계획) ①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(이하 “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.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, 추진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.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p>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운영계획) ①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(이하 “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.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, 추진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.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p>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.</p> <p>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선정 및 운영 등)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.</p> <p>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하거나 초·중·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(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)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,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</p> <p>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동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여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선정 및 운영 등)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.</p> <p>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 이라 한다)과 협의하거나 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,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</p> <p>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</p>
<p>제5조(수료증)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수료증)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6조(표창)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표창)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
<p>제7조(홍보)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,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홍보)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8조(협조)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.</p>	<p>제8조(협조)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.</p>
<p>제9조(시행세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9조(시행세칙) (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 및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청소년의회교실”이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운영계획)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(이하 “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

2.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, 추진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3.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.

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제4조(선정 및 운영 등)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.

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거나 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,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5조(수료증)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6조(표창)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

인에게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7조(홍보)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,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.

제8조(협조)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.

제9조(시행세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